

의안번호	2211742
의 퇴 인	서삼석의원
회 답 일	2025.11.12.
추계번호	25B404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4조(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 등) 신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제1항) 1. 산림경영의 규모화, 산지의 효율적 이용, 임업의 구조개선, 산지(山地)시장의 활성화와 임업인들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산지은행사업”이라 한다) 가. 산지의 매매·임대차에 관한 사업 나. 산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사업 라. 산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마. 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들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2.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의무규정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관리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관리원의 장은 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제7항)	
2	안 제25조(산지매매사업 등) 신설	관리원은 전업임업인을 육성하고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임업인들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1항) 1. 해당 산지를 매입하여 전업임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임업인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임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전업임업인 육성 대상자 및 임업법인에게 해당 산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임업인 육성 대상자 및 임업법인이 해당 산지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관리원은 전업임업인 육성 대상자 및 임업법인에게 산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임업인 육성 대상자 및 임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산지매매·알선사업자금의	의무규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3항)	
3	안 제26조(산지의 장기임대차 사업) 신설	관리원은 직업을 전환하거나 은퇴하려는 임업인의 산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임차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관리원이 제1항에 따라 산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음(제2항)	
		관리원은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4항)	의무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의 효율(料率), 그 밖에 임대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5항)	
4	안 제27조(직업을 전환한 임업인의 영림업 복귀 지원) 신설	제26조에 따라 산지를 임대하고 직업을 전환한 임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영림업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관리원은 해당 산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함(제1항)	재량·의무규정
		관리원은 산지를 매도하고 직업을 전환한 임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비용을 지원함(제2항)	의무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림업 복귀 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3항)	
5	안 제28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 등) 신설	관리원은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임업인 또는 임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임업인 또는 임업법인이 소유한 산지 및 산지에 딸린 임업용 시설(이하 “산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임업인 또는 임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지등의 매입 가격·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6	안 제29조(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 신설	관리원은 임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업인이 소유한 산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산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산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32조(산지매매사업자금의 용자 등) 신설	산림청장은 제25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산지매매사업, 산지의 장기임대차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매입사업, 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드는 자금을 제34	재량규정

		조에 따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에서 용자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용자를 받아 제25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제34조에 따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補填)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8	안 제33조(산지 정보관리체계의 정비 등) 신설	관리원은 산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안 제34조(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 신설	정부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산지은행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	의무규정
10	안 제35조(기금의 재원) 신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1항) 1. 정부의 출연금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입금 3. 제36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6.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및 과태료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의무규정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1	안 제36조(자금의 차입) 신설	산림청장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37조(기금의 용도) 신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함 1.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산지은행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용자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의무규정
13	안 제38조(기금운용위원회) 신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의무규정

		다)를 둠(제1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14	안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신설	산림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임업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15	안 부칙 제3조(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준비) 신설	산림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이 법에 따른 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함(제1항) 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부담함(제5항) 설립위원회는 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 준비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제6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미 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4조(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본문 참조
2	안 제25조(산지매매사업 등)		
3	안 제26조(산지의 장기임대차 사업)		
4	안 제27조(직업을 전환한 임업인의 영림업 복귀 지원)		
5	안 제28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 등)		
6	안 제29조(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		
7	안 제32조(산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9	안 제34조(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		
10	안 제35조(기금의 재원)		
11	안 제36조(자금의 차입)		
12	안 제37조(기금의 용도)		

13	안 제38조(기금운용위원회)								
14	안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15	안 부칙 제3조(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준비)								
8	안 제33조(산지 정보관리체계의 정비 등)	—	·미대상 -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구축·운영 중인 산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검색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개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산지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내용</th><th>2026(안)</th></tr><tr><td>산지정보 시스템 운영</td><td>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시로 산지구분도를 최신화하여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td><td>906</td></tr></table> 자료: 산림청	사업명	사업내용	2026(안)	산지정보 시스템 운영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시로 산지구분도를 최신화하여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	906
사업명	사업내용	2026(안)							
산지정보 시스템 운영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시로 산지구분도를 최신화하여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	906							

2. 상세 사유

□ 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 및 설립준비 등(안 제24조 및 부칙 제3조)

- 개정안은 산지은행사업¹⁾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원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원의 설립준비·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에서 관리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관리원의 조직·인력 규모와 설립준비에

1) 안 제24조(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산림경영의 규모화, 산지의 효율적 이용, 임업의 구조개선, 산지(山地)시장의 활성화와 임업인등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산지은행사업”이라 한다)

가. 산지의 매매·임대차에 관한 사업

나. 산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사업

라. 산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마. 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등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2.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산지매매사업자금의 용자 등(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2조)

-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안 제25조(산지매매사업 등)·제26조(산지의 장기임대차사업)·제28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 등) 및 제29조(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에 따른 사업에 드는 자금을 안 제34조에 따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에서 용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금 용자사업 시행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자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용자 규모, 용자의 요율·기간 등 추계에 필요한 변수들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안 제25조) 개정안은 전업임업인 육성 대상자 및 임업법인의 선정기준, 산지매매·알선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산지매매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음
 - 참고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²⁾에 따라 국가 등은 전문임업인(독립가·임업후계자)이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해 산림을 취득할 경우, 그 임업인에게 산지 매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리의 용자³⁾로 지원하고 있음

[표 1] 최근 3년간 산지매매사업 용자지원 현황

(단위 : ha,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면적	용자액	면적	용자액	면적	용자액
용자실적	1,699	50,156	2,125	58,613	2,207	52,734

자료: 산림청

- 또한, 안 제27조에 따라 관리원은 산지를 매도하고 직업을 전환한 임업인이 직업 전환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 우선적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3) (용자금리) 연1~2%, (용자기간) 20년 거치 15년 상환

있으나, 개정안에서 영림업 복귀 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알 수 없음

- (안 제26조) 개정안은 산지 장기임대차사업의 임대차대상자 선정, 임대차의 요율 등 임대차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예측하기 어렵고, 동 사업 참여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기준·수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사항으로 현시점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
- (안 제28조) 개정안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임업인 등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 등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현시점에 향후 발생할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임업인 또는 임업법인의 규모와 산지 매입 수요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산지 등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임대료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함
- (안 제29조) 개정안은 산지연금의 지원기준·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산지의 저당권설정 등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산지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산지연금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음
-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은 「국유림 확보 및 관리」 사업을 통해 산주에게 산지 매매대금에 이자 등을 포함하여 10년간 분할하여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2025년 기준 예산 106억원), 개정안의 취지는 산지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지원으로서, 연금의 수급개시 연령, 수급 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등(안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

- 개정안은 정부가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산지은행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 기금을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산지은행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에 사용하도록 하며,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동 기금을 재원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지은행사업 추진

자금 용자 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안 제32조에 대하여 검토한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계가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농지은행사업과 산지은행사업(안)의 비교

구 분		농지은행	산지은행(안)
산지임대 수탁사업	●수탁기간	■ 5년 이상	■ 5년 이상
	●수탁 수수료	■ 임차료의 5%	■ 건당 20만원
	●대상지	■ 1,000㎡ 이상	■ 0.5ha 이상
	●임차인 선정	■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사를 직접 짓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	■ 임업경영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 ■ 전문임업인, 1ha 이상 산지를 경영하고 있는 자 우선 선정
산지매도 수탁사업	●수탁기간	■ 6월 이내	■ 1년 이내
	●수탁수수료	■ 0.6~0.9%(5천만원) 가격대별 상이	■ 건당 20만원(1회)
	●대상지	■ 1,000㎡ 이상	■ 1ha 이상 산지 및 30ha 미만 산지 ■ 준보전산지
	●매도대상	■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 산주, 임업인 등이 소유한 「산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림
산지 매매사업	●대상지	■ 1,983㎡ 이상 농지 ■ 감정가격이 25,000원/㎡ 미만 농지	■ 1ha 미만 산지 및 30ha 이상 산지 ■ 감정가격이 3,000원/㎡ 미만 산지
	●매도대상	■ 만65세 미만인자 ■ 이농·전업(전업),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 만65세 미만인 자 ■ 전문임업인, 산지면적 1ha 이상 소유자, 산림경영복귀자 우선 선정
	●매도제외자	■ 영농규모화사업 원리금 연체중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의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이외의 자	■ 산지매입자금 원리금 연체중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산지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산지까지의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는 임업인 이외의 자 다만, 구입하려는 산지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산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산지를 1ha이상 경영하고 있는 자에게는 매도 가능
	●지원조건	■ 금리 : 연 1% ■ 상환기간 : 15~30년(연령으로 차등적용)	■ 금리 : 연 1~2% ■ 상환기간 : 15~35년(연령으로 차등적용)

구 분		농지은행	산지은행(안)
		■ 상한 : 논 30천원(밭 35천원)/3.3m² → 초과금은 자부담	■ 상한 : 15천원/3.3m²(총액 3억원) → 초과금은 자부담
	●기타	■ 영농복귀지원사업 포함	■ 산림경영복귀지원사업 포함
산지 임대차 사업	●임대차 기간	■ 5년 이상	■ 5년 이상
	●대상지	■ 2,000m² 이상~100,000m² 미만	■ 0.5ha 이상~30ha 미만
	●임차인 선정	■ 만 55세 이하인 자로서 ■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우량농지) 등에서 승인 받고 농업용 간이시설이나 농업용 비닐 온실 등 설치 가능) ■ 만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혹은 경영 실급 임대농장 운영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문임업인 및 산지면적 1ha 이상 소유자 우선 선정 * 연령제한 없음 * 임차 제외자는 산지매매사업 매도 제외자와 동일함
교환· 분할사업	●지원내용	■ 교환 또는 분리·합병 농지의 가격 차액(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일 때 성립됨) ■ 연리 1% ■ 10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 교환 또는 분리·합병 산지의 가격 차액(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일 때 성립됨) ■ 연리 1% ■ 10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주요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정리	■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산지교환, 분할 및 합병
연금사업	●대상자	■ 영농경력 5년 이상 ■ 농지소유자 60세 이상	■ 산주 ■ 제한없음
	●대상지	■ 2년이상 보유 ■ 30,000m² 이하 농지(9억원 기준)(상한선 월 300만원 수령)	■ 2년이상 보유 ■ 산지의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산지(상한선 월 100만원 수령) – 지급기간 15년을 넘는 잔액은 계약시일시금으로 지급
	●연금수령액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 적용	■ 2인이상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적용(입목재해보험 가입시 입목가 포함)
	●연금수령방식	■ 매월수령 ■ 중신형 ■ 기간형(5,10,15년) – 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	■ 매월수령 ■ 기간형(5,10,15년)
경영회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최근 3년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가 40백만원 이상인 농가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가 40백만원 이상인 일반 농업경영체

구 분		농지은행	산지은행(안)
		농업경영체 ■ 영농경력 2년 이상 등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 산림경영 경력 2년 이상 등
	●지원내용	■ 소유농지 매입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임대 ■ 임대기간 7년	■ 소유산지 매입하여 해당 임업인에게 임대 ■ 임대기간 7년
	●제외대상	■ 최근 2년 내 세대원의 소유농지 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년도 1월1일 현재 70세 이상인 자 (65세~69세 단서 조항)	■ 30ha 이상인 산지 (제외규모 30ha는 향후 연구를 통하여 조정)
매입비축 사업	●도입목적	■ 농지가격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하락시 농지매도물량의 급증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농가파산 및 농업금융기관의 부실에 대비	■ 미 도입

주: 본 자료는 산림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산지은행사업(안)을 농지은행사업과 비교한 것임
 자료: 산림청